
세무(2)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지방세정 홍보강화

-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, SNS,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정보기술 및 홍보 기법을 이용하여 세무 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목별 납기 개시 10일 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.

2. 납세자의 권리보호

- 「납세자 권리헌장」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,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시 법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겠습니다.
- 과세처분을 받은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 대상자에게는 비과세·감면 범위와 요건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

3. 신속·정확·공정한 세무서비스 제공

-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처리 시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은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하겠습니다.
-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**인터넷지로, 위택스**를 통한 온라인 납부, **카카오페이** 등을 통한 모바일페이 납부, **지방세 ARS 납부, 자동 계좌 이체 납부** 등의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과세자료를 완벽히 구축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전자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 등 다양한 고지서 송달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4. 정확한 고지서 송달

-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부하여 납기 마감일이 임박하여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전화를 주시면 수취하기 편리한 곳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5.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

◆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안내 ◆

세 목		납 부 기 한
취득세		취득일부터 60일(상속취득은 6개월) 이내
등록면허세	등록분	등기·등록 시
지방소득세	소득분	개인 종합 : 5. 1. ~ 5. 31. 개인 양도 :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
		법인 :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
	특별징수	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
자동차세	연납·분납	연납신청 : 1월, 3월, 6월, 9월 분납신청 : 3. 16. ~ 3. 31. / 9. 16. ~ 9. 30.

☞ 지방세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은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%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가 가산됩니다.

◆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◆

세 목	납 기	세 목	납 기
자동차세 (1기분)	6. 16. ~ 6. 30.	자동차세 (2기분)	12. 16. ~ 12. 31.

- ☞ 정기분 세목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지방세를 납부 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 3%와 매월 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(중가산금)(체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)이 가산됩니다.
- ☞ 자동차를 매도하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민원 서류 신청 시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처리 기한 이전에 중간 경과 사항을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.

6.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

서 비 스 명	담 당	전 화 번 호	팩 스 (FAX)
지방소득세(중소, 양도, 법인, 특별)	지방소득세1담당 지방소득세2담당	220-4211~4, 4741~3	220-4219, 4199
취득세·등록면허세(등록분) 신고·접수 및 부과·징수	취득세담당	220-4191~7	
자동차세, 차량취득세 부과·징수	자동차세담당	220-4251~4	

7.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

-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.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원활한 구정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민원 서류 신청 시 미리 전화로 구비 서류 등을 문의하여 주시면 서류 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
- 납부하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